

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1월 31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: 2024년 1월 16일
- 나. 제안자: 김순옥 의원 외 5명
- 다. 회부일자: 2024년 1월 22일
- 라. 상정일자: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4. 1. 31.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: 김순옥 의원)

□ 제안이유

저출산 시대의 직면에 따라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중요성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여, 다양한 출산·양육 지원 및 정책의 발굴과 출산·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출산 및 양육 관련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)
- 다. 「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」의 수립·시행 (안 제6조)
- 라. 출산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내역 (안 제8조 ~ 제9조)
- 마. 부정 수급에 대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(안 제10조)
- 바. 출산 및 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나. 해당부서: 가족정책과

다. 기 타: 입법예고(2024. 1. 19. ~ 1. 23.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: 권오숙)

가. 제정취지

- 저출산 시대의 직면에 따라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중요성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하여, 다양한 출산·양육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출산·양육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

나. 주요 제정내용

- 안 제1조에서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,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함
-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1. “출산 및 양육 지원”이란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·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 및 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
2. “임신·출산에 따른 부담경감”이란 자녀양육에 따른 각종 비용지원 및 육아지원 등과 같은 인적·물적 서비스를 말한다
3. “자녀양육에 따른 부담경감”이란 자녀양육에 따른 각종 비용지원 및 육아지원 등과 같은 인적·물적 서비스를 말한다
4. “편의서비스”란 자녀 양육의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이동수단·가사 서비스 등과 같은 비용지원 및 인적·물적 서비스 지원을 말한다

- **안 제3조**에서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와 양육 지원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
- **안 제6조**에서는 구청장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)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였음

제6조(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

1.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출산 및 양육 친화 분위기의 조성 방안
3.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및 사업 주요내용
4.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**안 제8조 ~ 9조**에서는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, 자녀를 출산·양육하는 구민이 일·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구청장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명시함

제8조(출산 및 양육지원)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

1.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사업 지원
2. 임신·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
3.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
4.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
5. 자녀양육가정을 위한 편의서비스 지원
6. 자녀양육에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지원
7. 출산 및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

제9조(출산 및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)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고, 자녀를 출산·양육하는 구민이 일·생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

1. 일·생활 균형 직장 및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
2. 여성의 경력보유 유지를 위한 지원
3.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지원

- **안 제10조**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,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함을 명시함
- **안 제11조**에서는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한 저출산 대책의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, 매체를 활용하여 지원 정책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중요성을 고취하고, 현실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출산·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
- 통계청 「2022년 출생통계 _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¹⁾」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.78명으로, 이는 1970년대 출생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로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나타냄

1) 「2022년 출생통계 _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」 (통계청)

- 합계출산율: 한 여자가 가임기간(15~49세)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

연도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
합계 출산율	1.187	1.205	1.239	1.172	1.052	0.977	0.918	0.837	0.808	0.780

※ 서울 강서구 합계출산율(2022년): 0.59명 【통계청 인구동향 조사】
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9년 발표한 「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」 보고서에 따르면, 기혼인 성인남녀가 “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주된 이유”에 대해 “아이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(25.3%)”, “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 불만족(8.3%)” 등 출산·양육에 따른 과도한 비용부담과 불편한 보육환경이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각종 비용지원 등과 같은 부담경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
-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를 출산·양육하는 구민이 일과 생활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제반사항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,
- 정부사업인 **첫만남이용권**²⁾ 지원으로 대체되어 중단된 기존 출산양육지원금 등 유명무실한 사업을 정비하고, 저출생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됨

2) 「첫만남이용권」 지원

- 대상: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- 지원내용: 출생시 첫째 200만원, 둘째 이상 300만원 일시금(1회) 지급
- 지원방식: 국가바우처통합카드(국민행복카드) 포인트 지급
- ※ 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일)로부터 1년동안 사용 가능
- 2024년 소요예산: 5,942,000천원(국비 45%, 시비 27.5%, 구비 27.5%)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(인구교육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결혼·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2. 5. 23.]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23.>

제21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... <생략>..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14.>

제32조(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14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

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14.>

□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, 가정친화적 환경조성,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혼인과 출산)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·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·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지원
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3. 안정된 주거생활
4. 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5. 직장과의 양립
6. 음란물·유혹·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
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8.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·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